중등 학생 자치활동 규정

제정 2018. 3. 2
개정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홍콩한국국제학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자치회

제2조(명칭) 본 학생회는 홍콩한국국제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권리·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기구) 본회는 학생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급회, 지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학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구성된다.

제7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2. 주요 사업에 대한 청취 및 보고
3. 기타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편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성원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11학년)
2. 부 회 장 : 3명 (9,10,11학년 각 1명)
3. 각 부서별 부장 (학예·문화체육부, 생활복지·선도부, 학습·봉사부)

제9조(부서조직) 운영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서를 조직하고 부서의 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①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각 학기 시작부터 학기 말까지 한학기로 한다.
② 학생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생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③ 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회의 소집 및 각 부의 추진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받은 사항
4.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4장 학생회장, 부회장의 선거

제12조 (선출 시기) 학생 회장단 선출은 당해 연도 6월과 2월에 실시한다.

제13조 (선출 인원)

① 학생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선출한다.
② 학생회장은 11학년, 부회장은 9,10,11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선출 방법)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11학년 학생 회장단은 총 유효 투표수의 최다 득표자의 3순위까지 선출한 후, 결선 투표를 통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 차순위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③ 9, 10학년 학생회 부회장은 학년별 후보중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④ 학생회장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간접선거로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5조 (후보자 자격)

① 학생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할 마음자세를 갖추고, 지휘 통솔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재학생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자로 한다.

② 후보자는 최근 1년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항이 없어야 한다.

제16조(입후보 방법) 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재학생 5명의 추천인 서명이 포함된 후보자 추천서 및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7조(공고 및 등록 절차)

① 학생회장 선거 공고는 선거일 15일 전에 한다.

② 학생회장 후보 등록은 선거일 5일 전까지 한다.

③ 학생회장 후보 공고는 선거일 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한다.

④ 학생회장단 당선자 공고는 개표 결과를 확인한 후 즉시 한다.

제18조(후보자 기호 부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직후 후보자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주관으로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부여한다.

제1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학생 총회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다.

② 홍보용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게시 한다.

③ 학급에서의 선거운동은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후보연설 시간은 각각 4분 이내로 한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1학년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 학년 대의원 중에서 10명 내외를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일정 및 선거 방법 홍보
2. 입후보자의 등록 및 접수 공고
3. 선거인단 명부 작성
4. 소견 발표 및 준비
5. 투표용지 준비
6. 투표함 및 투표소 설치
7. 투표 진행 및 개표
8.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제21조(자격상실) ①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이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②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대의원회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 회장단,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의장, 부의장, 서기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의장은 학생회 회장이, 부의장은 학생회 11학년 부회장이 맡는다.
③ 서기는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하여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3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학생자치활동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 상정
3. 임시 학생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임원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
5. 학생회에서 부의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24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되, 정기회는 한 학기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학생회 및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학급회

제25조(목적)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급의 회장·부회장 선출 및 학급회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학급회의 구성)
① 학급회는 학급 재적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급의 회장·부회장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27조(기능) 학급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급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학급회 주제에 따른 실천 사항
3.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4. 기타 토의 사항(친교활동, 상담활동, 진로탐색활동)

제28조(학급의 회장·부회장의 후보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급의 회장·부회장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책임감이 투철하며 통솔력이 있는 자
2. 근면 성실하여 학습 및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29조(학급의 회장·부회장의 선출방법)

①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학급 재적학생의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③ 선출된 학급의 회장·부회장은 학생회 지도위원회가 그 자격을 심의한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0조(선출 시기 및 임기) 학급의 회장·부회장은 학기 초 학급 자율활동 시간에 선출하며, 그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동일학년에서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 모두 중임을 금하되(1학기 학급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학생은 2학기 학급 회장과 부회장 모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음) 단, 중임을 하지 않고는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임을 인정한다.)

제31조(학급의 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급을 통괄하고, 학급회를 운영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회의 정·부회장이 되며 학급을 대표하여 학생회 대의원이 된다.

제32조(학급회의 조직)

① 학급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서를 두고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예 : 총무부, 학습부, 환경미화부, 체육부, 봉사부 등)
② 학급회의 각 부장은 1인을 두되 회장·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담임교사가 임명한다.

제7장 (학생생활인권)지도위원회

제33조(지도위원회의 구성)

① 지도위원회는 교장, 교무부장, 생활지도담당자(학생회담당교사), 진로상담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한다.

제34조(자문) 학생회의 모든 의결 사항은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35조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 총회, 대의원회,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선거 관리 및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2일 개정(1차개정)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 개정(2차개정)하여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 개정(3차개정)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개정)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생활·인권지도협의회]를 통하여 상정 개정안을 검토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할 수 있다.